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중기업 영관권

2023/10/25 통권 1646호

CEO 에서이 - 이해익원장 그놈의 집이 웬수(?)

2023년 세법해석사례집 (부가가치세 분야)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계모 사망시 상속 아니고 유증이므로 상속공제(기초 공제 2억 + 자녀 등 공제 3억)는 적용되지 않음
-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3년 세법해석사례집(부가가치세 분야)
-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공개초안 '교 환가능성 결여' 검토보고서

·CMO·미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투자자에게 토큰양도시점의 최종거래시세가 격으로 수익인식함 (p.13)

저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사업상신용카드구입지출금액의 매입세액불공제와 업무추진비 분류〉

개념구분	세금쟁점문제와 관련규정 등
신용카드 증빙의 위상	대금결제수단 + 거래증빙(=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영수증 기능 : 부가세법 제36조)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자	일반소비용품업자(소매, 음식점, 숙박, 생활서비스업, 여객운송, 입장권 발행사업 등 : 부가세법 제36조)
매입세액공제규정	일반소비용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되는 매입세금계산서임(= 부가세법 제46조제3항)
매입세액공제가능	매출수입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 사업상의 구입·지출 등, 적 정대응원가,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됨
매입세액불공제됨 (부가세 추징됨)	부가세법 제39조 : 합계표 미제출, 사실과 다른 거래, 신용카드 전표 없는 경우, 사업무관지출, 소형승용차 관련지출, 기업업무 추진비 유사비용지출, 면세사업용지출, 토지관련지출 : 해당지 출금액의 10% 매입세액공제부인됨)
기업업무추진비 분류	사업상 필요비용 아니고, 접대·교제·사례 등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로 분류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됨(법인세법 제25조 기타사외유출임)
사용자의 사적 지출	사용자에 대한 소득처리(근로자는 상여처분 근로소득합산 연말 정산, 사업자는 종합소득증가 : 소득세법 제35조, 그 외는 기타 소득처리 과세됨)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급한 발급결제금액×1.3%(24년부터는 1%≦연 500만원 한도) : 부가세법 제46조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한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46호 / 주간 43호

2023. 10. 25.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 • • •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사업상 신용카드 구입지출금액의 매입세액불공제와 업무추진비 분류	田川
긴 급 시 사 해 설	계모 사망시 상속 아니고 유증이므로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 자녀 등 공 제 3억)는 적용되지 않음	
C E O 에 세 이	문화(文化)는 문화(脗和)다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자산의 임대료 - 자회사와 원재료 공동구매후 수출시 - 대손 문의입니다 - 교육비 관련 세제혜택 문의	6 7
눈에맞는절세미인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8
매일절세재무요점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영향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 11
직장인Survival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재능을 찾아라	12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기준법무법인-118, 2023.03.09) -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 \$163 ⓒ에 따르는 것임 (사전법규재산-880, 2022.11.28)	13
세정뉴스와 해설	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가스 보조금··· 유가 급등 우려	15
마 케 팅 Tax consulting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투자자에게 토 큰양도시점의 최종거래시세가격으로 수익인식함	13
세 무 정 보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2023년 세법해석사례집(부가가치세 분야)	16 17
회 계 정 보	–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 검토 보고서	3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5

계모 사망시 상속이 아니고 유증이므로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 자녀 등 공제 3억)는 적용되지 않음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지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品川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 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 지 아니함

⊙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3, 2012.09.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 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I. 사실관계

• '22.6월 신청인의 계모 사망

• '21.4월 계모가 작성한 유언장에 의거 계모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22.8월 신청인이 취득함

2. 질의내용

• 계자(繼子)가 계모(繼母)의 재산을 유증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해당 재산가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u>상속이 개시</u>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u>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u>.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u>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u>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경영진코니

문화(文化)는 문화(脗和)다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문화(文化)는 문화(脗和)다. 합할 문(脗)이며 화할 화(和)다. 위아래 입술처럼 잘 맞는 게 문합 (脗合)이고 구성원들끼리 화기애애한 것이 화목(和睦)이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다.

"삶은 유약(柔弱)하고 죽음은 견강(堅强)하다." 노자 말씀이다. 사람의 몸은 살아 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죽으면 굳어진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게 자연 법칙이다. 군대가 국경을 넘으면 전쟁이고 비즈니스맨이 국경을 넘으면 평화다. 사랑은 따뜻하고 영원하나 미움은 차고 소멸한다.

기업조직도 마찬가지다. 유연하면 살지만 강직하면 죽는다. 가정과 기업은 인간 지혜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회조직이다. 가정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집단이며 회사는 비즈니스맨들이 모인 곳이다.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저자인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퇴니에스의 성찰이다. 게마인샤프트, 즉 공동사회의 전형인 농촌사회에서는 대인관계가 자생적 정서에 의해서 결정된 다. 게젤샤프트, 즉 이익사회는 합리적 의지의 산물이다. 기업이 대표적이다. 현대에 이르러 가정 은 황폐해졌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그만큼 짐지게 됐다.

기업 역시 법인(法人)이므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다. 죽음은 뭇 생명체처럼 경직성에 따른 노쇠와 질병 때문이다.

네델란드는 1597년부터 1601년에 걸쳐 15개의 선단, 총 65척의 배를 자바섬으로 보냈다. 목적은 향신료 무역에 있었다. 1602년에는 네델란드 기업 간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한 '네델란드 동인도회사'를 설립했다.

이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기원이다. 그들에게는 투철한 상인정신이 있었다. 바로 '신용'이었다. 이렇게 네델란드는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나 네델란드 동인도회사는 점점 시장과 상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1800년 폐업했다. 조직의 문화가 노쇠해졌기 때문이다.

'조직의 성쇠'의 저자 사카이야 다이치에 의하면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성공신화에 매몰되기 때문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직은 계속되는 성장에 도취했다. 그래서 무모하게 덩치를 키워 나갔다. 분수에 넘치는 군사를 동원하고 무리하게 조선 침공에 나섰다. IMF 외환위기때 한국 30대 재벌의 1/2이 무너졌다. 그들 역시 무작정 덩치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정실인사 때문이다. 그것은 2차대전 패배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본보기다. 고위직은 육사와 해사출신만의 잔치였다.

셋째,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 때문이다. 일본의 석탄산업이 대표적이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여기에 속한다. 대체로 독점상태에서 정권의 비호아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를 보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감사를 벌였다. '나눠 먹기'가 만연했다. 개인관광 항공료, 개인적인 '한 잔' 접대비용, 골프비용도 법인 카드로 지불되는 등 치졸한 비리가 여전했다. 무늬만 민영기업이었던 KT에도 '적당주의'와 '비리'가 곳곳에 있었다. 비리를 일벌백계했다. 구매절차를 개선했다. 협력회사와는 상생을 위해 '최저가 입찰' 방식을 없앴다. 품질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면서 '일물 복수가격제'를 도입했다. 요직에는 '일자리 공개시장(Job Open Market)'을 통해 지원자들을 공모하는 등 열린 경영을 표방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다. 부드러움은생(生)하고 뻣뻣함은 사(死)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인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통 화 명		10월 13일 (금)	10월 16일 (월)	10월 17일 (화)	10월 18일 (수)	10월 19일 (목)
		달		러	(USD)	1339.90	1349.40	1353.80	1351.90	1351.70
일		본		엔	(JPY)	894.73	901.98	905.10	902.56	901.95
영	국	파	운	드	(GBP)	1632.07	1639.72	1653.40	1646.61	1641.37
캐	나	다	달	러	(CAD)	978.89	988.93	994.34	990.44	985.56
홍	콩		달	러	(HKD)	171.26	172.45	173.17	172.79	172.64
중		국		원	(CNH)	183.63	184.70	185.25	184.75	184.76
유		로		화	(EUR)	1411.32	1419.43	1429.21	1429.57	1424.49
호	주		달	러	(AUD)	846.08	851.07	858.04	860.69	855.83
싱	가	폴	달	러	(SGD)	978.35	985.36	989.40	987.87	984.09
말	레이.	시이	링 기	기트	(MYR)	284.33	285.38	285.85	285.45	284.90

자산의 임대료 관련 정기예금이자율은 2.9%임

독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면 자산의 임대료는 시가의 50%에서 정기예금이자율(연간 0.0%)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정기예금이자율이 얼마인지요?

Α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9%입니다.

자회사와 원재료 공동구매후 수출시

대만,중국에 있는 자회사 및 자매회사와 당사의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당사가 원재료 대금을 미리 지급(대금 결제 조건은 원재료 선적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한달 후에 자회사로부터 원재료 대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거래절차)

- 1. 당사가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수입 통관 후 대만 및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예정
- 2.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은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 그대로 수출(JPY금액에 환율 적용 USD 로 지급 받음)

질의사항)

- 1. 공동구매후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을 margin을 붙이지 않고 매입 금액 그대로 수출할 경우 어떤 tax issue가 있을까요?
- 2. 만약 margin을 붙인다면 통상적으로 몇 %가 적정한가요? TP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 3. 수입통관시 발생되는 VAT에 대해서 당사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4. 기타 상기 거래로 발생될 수 있는 국제거래 tax issue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계약서 등에 의해 공동구매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마진없이 구매가액 그대로 수출하더로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공동구매가 아닌 귀사가 매입후 재판매하는 거래라면 국외특수 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 2. 통상적 마진의 적적성은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이 아니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 3. 모든 물품을 귀사가 구매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구매의 경우라면 귀사구입분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

수출채권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금만 인정됨

Q = 2020년도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2년 이상지났으면 결산조정할수있는걸로 신설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수출대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인경우만 되는데 위에 신설된걸로 반영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안통한채권도 대손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 정하는 범위가 열거규정되어 있는데, 수출로 인한 채권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된 것만 인정되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비 관련 별도 세제혜택은 없음

■ 당사는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년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사내 임직원 교육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및 도서구입 관련 실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 법인이 직접 법인카드나 현금지출을 이용하여 교육비, 도서구매 관련 지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 2) 직원이 교육비 및 도서 구매 후 법인이 실비정산을 할 경우

1. 법인이 임직원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비 등을 실비 지원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경우 교육비와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을 없습니다.

경리인코너

증여시에는 증여관련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많을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바, 가급 적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증여사실의 입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2,100만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금융상품 가입 당시 아버지가 2,1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미성년자녀의 증여공제액인 2,000만원을 제외한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100×10%=1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15년 후에 아들이 7,000만원을 찾아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들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초 저축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7,000만원-5,000만원(증여공제액)=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000만원×10%=2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2,1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금융상품 가입시점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15년 이후의 증가액인 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증여시점에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 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 세 신고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 ·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000만원(2,0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구분	1997.1.1이후	1997. 1. 1 이후 1999. 1. 1이후		2008. I. I이후	
합산기간	합산기간 5년		10년	10년	
공제액	5억	5억	3억	6억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녤

■ 금<mark>융투</mark>자소득세 도입 영향

	도입전	도입후
과세 대상	1만5000명	15만명
세 부담	1조5000억원	3조원

신탁 수익권을 활용한 증여 방식

① 증여하려는 부동산 자산에 신탁 설정

▼

② 발생한 신탁 수익권을 기반 세감면 법인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③ 자녀를 대주주로 한 법인 별도 설립

▼

④ 자녀의 법인에 세감면 법인(②)의 지분 양도

기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분	내용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2008.1.1. 이후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 가업승계 후 가업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가업승계 당시 해당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 우는 제외
대상	② ①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동시 증여):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나.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순차 증여):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수증자로 보아 부과되는 증여세액
요건	•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 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적용 불가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사업무관 자산가액비율 제외함) $\times (1 - \frac{사업무관 자산 가액}{*})$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재능을 찾아라

"나는 나를 넘어섰다"는 카피로 주목받은 국내 자동차광고 모델 김민철씨는 헤비급 레슬러에서 모델로 변신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초등학교때부터 또래보다 덩치가 좋았던 그는 당시 인기높은 씨름부에 들어갔는데, 6학년때 LA올림픽에서 김원기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고 주목받는 것을 보고는 오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꿨고 곧 레슬링계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레슬링이 비인기종목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멋진 포즈를 취하는 패션모델을 보고는 모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주변에서는 "레슬링밖에 모르는 녀석이 무슨 모델이냐"며 반대가 거셌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스포츠센터에서 코치로 일하며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던 그는 고민 끝에 사진 몇 장과 뮤직비디오 한 개를 들고 프랑스로 날아갔다. 나중에 후회하 기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무작정 떠난 파리에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우리나라 남자모델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파리 오뜨꾸뛰르 무대에 섰다.

성공하려면 어떤 일에 미쳐야 하고, 그러려면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만한 자신의 재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되는 일이 하나 없다고 투덜대는 당신, 잘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 성공 경험이 없는 당신, 이겨본 적이 없는 당신이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찾으면 경쟁력이 될 다이아몬드를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투자자에게 토큰양도시점의 최종거래시세가격으로 수익인식함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기준법무법인-118, 2023.03.09

▮질 의

•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 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전)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 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 법(2022.1.1. 전)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2안>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 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 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 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241, 2023.03.07

▮질 의

- 신청법인이 산업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본건 산업단지 내에 건축하는 공장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인 신청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시설 및 공업용수시설(산업단지 밖에 설치되며, 이하 "기반시설")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갑법인과 산업시설용지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및 공사시행 협약 및 기반시설설치 부담금 납부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역무를 제공받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 에 따르는 것임

사전법규재산-880, 2022.11.28

▮질 의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가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 양도 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준

▮회 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 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발생한 상속세 대납과 관 련된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가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 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2296, 2023.03.16

▮질 의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회 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 · 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 · 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 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국내·외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가스 보조금… 유가 급등 우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 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 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 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물가나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 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가격을 이유로 유류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회계기준질의회신 한 눈에···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열람서비스' 개시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18일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공개했다.

회계기준열람서비스에선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던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기업이 직면한 회계이슈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및 이용 가능하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가 선보일 '회계정 보 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기준원 웹사이트 내에서 회계기준열람서비스 외에도 '신속정규절차질의'를 함께 운영한다.

기업은 열람서비스를 통해 회계문제에 대해 자체 해결 할 영역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어려운 회계문제가 있어도 회계기준원 회계질의 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정기관을 통해 편리

하게 습득할 수 있고, 투자자는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 번에 모아 파악해 투자의사결정에 도움 받 을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되는 질의회신 요약과 연차개선 및 개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추가적인 가독성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내 년까지 회계기준 본문과 관련 결론도출근거를 연계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 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 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 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류세 탄력세욜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국세청, 2023. 10

정부는 '23.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 (LPG)부탁 △37%) 조치를 '23.12.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10.18 (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하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폭 >	(단위 : 원/ℓ)		
	인하 전	'21.11.12. ~ '22.5.1. ~ '22.7.1. ~ '22.4.30. 6.30. 12.31.		'23.1.1. ~ 12.31.	
유종	탄력세율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개정안은 사우디 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3.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 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triangle 73$ 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

	'22년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B월	<u> </u> 물월	10,13
휘발유	1,813	1,563	1,578	1,592	1,641	1,629	1,581	1,585	1,717	1,769	1,782
경유	1,843	1,675	1,606	1,540	1,536	1,472	1,394	1,396	1,573	1,667	1,693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1,082	1,020	992	989	988	988	961	905	870	895	941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0.18.~19),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4. 예정) 등을 거쳐 '23.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세법해석사례집 (부가가치세 분야)

- 국세청, 2023. 10

1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게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답변요지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해외지점은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며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국내 갑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해외 A국에 을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등기
- 을지점은 A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등록 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계약·대금수수 모두 을지점 명의)
- 갑법인은 을지점이 A국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장인 을지점이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질의내용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이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 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제하고 존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에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사전-2023-법규부가-0136, 2023.04.03.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 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또는 "임대인")은 '22.10.17. 주식회사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이하 "본 건 계약")을 체결함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약 가능
- 질의인은 임차인이 당초 본건 부동산을 영상제작 촬영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고지 받았으 나.
 - 임차인이 본건 계약과 달리 본건 부동산을 ◇◇◇, 스페이스△△△ 등 공간임대업 중개 업체에 임대가능 공간으로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 받음 에 따라
 - 임차인이 본건 부동산을 당초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 질의인은 '23.2.21. 임차인에게 본건 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서 통보를 받는 즉시 본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이를 인도할 것을 알림
 - 질의인은 본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 에게 손해배상 청구함*
 - * 질의인은 본건 계약해지 이후에도 동일하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본건 계약이 계속 유지됨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질의내용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대인")가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해지 통고하면서 무단점유에 따른 손실금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에 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의 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다만,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임대인이 지급받을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판결 내용 및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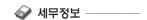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발전기별로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을 전력거래소에 입찰하며 실제 발전할 계획량을 통보받아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함
 -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음
- (대금정산) 발전사업자는 매월 4차례에 걸쳐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 거래소는 질의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음
 - 전력량정산금: 에너지 소비를 위한 실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대가로 입찰을 통해 결정된
 시간별 발전량에 따라 지급
 - 용량정산금:고정비용 보상 성격으로 발전 입찰에 참여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시간별 공급 가능용량에 대한 지급



질의내용

발전사업자가 실제 전력의 공급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4

상계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요지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오피스 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1.7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체 ○○○세대 중 ○○○세대에 대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면세매출(상시주거용)로 부가세 신고
 - 재산세 부담, 이자율 상승 등 고정비 증가로 분양을 진행하던 중 '22.8월 1개 호실을 개 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 신 문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준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준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5

구분 등기된 2이상의 /**마업**장 중 일부 /**마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마업의 양도** 해당 여부

답변요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2021.10.2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월 **도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21.10월 임대중인 5개 호실*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 * 103호(편의점), 104호(커피숍), 105~107호(식당, "본건 사업장")
 -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여, 현 상태의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 신 문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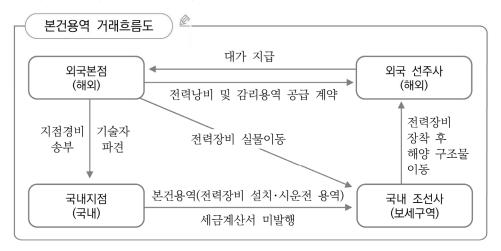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9, 2022.04.26.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감독·시운전 감리용역(본건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국내지점')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설치되는 선박추진, 전기제어 장비 등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기업(이하 '외국본점')의 국내 지점임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①전력장비 공급계약과 ②전력장비의 설치 감독, 시운전 등의 감리 용역 계약을 직접 체결
 - ① 전력장비는 국내 보세구역으로 인도되어 국내 조선사가 건조 중인 해양구조물에 장착된 후 해외로 반출, 해외대륙붕에서 최종 시운전 및 테스트 후 가동
 - ② 국내지점은 국내 보세구역에서 전력장비가 해양구조물에 장착되는 과정에 대해 설치·시운 전 감리용역(이하 '본건용역') 수행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전력장비와 용역매출 대금을 외국 선주사로 부터 전부 수취하고 외국본점은 수취한 대금 중 인건비, 여비교통비, 외주비, 임차료 및 제세 공과금 등 국내지점의 지출경비를 국내지점에게 송금

질의내용

○ 외국본점은 외국선주사와 전력장비공급과 감리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직접 체

결하고, 국내지점은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력장비 설치·시운전 감리용역 제공 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문

-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전력장비 공급 및 동 전력장비 설치 감독·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본건 용역을 제공한 경우 丙의 본건용역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 해당함
- 그리고 동 계약의 대금을 乙로부터 甲이 지급 받은 후, 본건용역을 수행한 丙이 甲으로부터 운영경비 형태로 외화를 송금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 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7

해외직용 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에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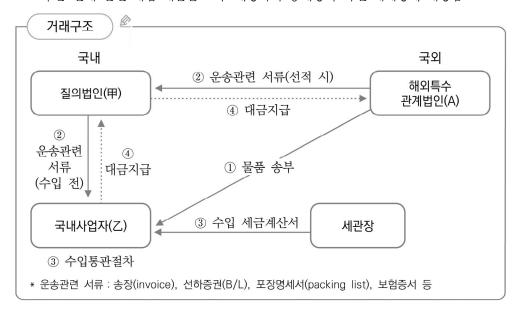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甲)은 산업용재화 무역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로, 독일 소재 국외본사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 甲은 국내사업자(乙)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특수관계법인(A)에 주문 요청
 - ① A는 甲의 요청에 따라 Z에게 물품을 직접 송부
 - ② A는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 서류*를 甲에게 송부하고, 甲은 해당 서류를 Z에게 송부
 - * 송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서 등
 - 선하증권은 수하인 乙명의의 기명식*으로, 甲은 A로부터 운송 관련 서류와 함께 송부 받아 기에게 송부
 - * 송하인: A, 수하인: Z, 착화통지처: 甲
 - ③ Z은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입부

가세 납부

- ④ Z은 甲에게, 甲은 A에게 각각 대금지급
 - 甲은 판매 관련 매입·매출을 모두 계상하여 중개상이 아닌 매매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甲이 Z에게 선하증권 등을 송부한 위 ②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단순교부 방식)

회 신 문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A로부터 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乙에게 교부하고 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구매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결제시 재화의 공급시기

답변요지 서면-2022-법규부가-1407, 2022.06.28.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 공산품 등 도소매,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등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 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고
 -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하도록 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신용카드 결제일인지 구매결정(확정)일인지 여부

회 신 문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 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9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끼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새 발급시기

답변요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2021.08.24.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기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6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비기반공급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이설)용역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18.1월 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19.12월 질의법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조합과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20.3월 조합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동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요약
- 1. 자문법인은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한다.
- 4. 자문법인이 용역 실행에 따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련내용을 검토 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자문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질의법인은 '20.11월 계약 해지 전 용역을 공급하며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조합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 정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 신 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0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 'MCN 계약(유튜브 광고 수입배분)'을 체결
 - * MCN(Multi Channel Networks, 다중채널네트워크):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1인·중소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눠 갖는 미디어 사업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질의인에게 원화로 지급

질의내용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인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문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에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요지 사전-2022-법규부가-0936, 2022.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A사")는 자동차 및 차량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그룹(이하 "△△△")의 차량을 국내 수입하여 국내딜러사에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 으며
 - '21.1월 △△△와 ○○○그룹(이하 "@@@")이 합병함에 따라 △△△그룹의 차량에 더하 여 '22.1월부터 @@@그룹의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차량판매 및 서비스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수입한 차량을 국내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딜러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 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보증수리 요청이 발생하면
 - ① △△△차량의 보증기간 내 차량수리비는 A사가 부담하고.
 - ② @@@차량의 경우 합병일 전에 @@@가 국내딜러사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의 차량수리비는 @@@가 부담함
- @@@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와 보증수리 처리문제를 직접 수행하기에 물리적인 거리 등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2.1월 A사와 'Service Agreement'(이하 "서비스계약") 을 체결함
- A사는 본건 서비스계약 체결에 따라 @@@를 대신하여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업무를 대행함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프랑스 소재)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공 급한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회 신 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의 보증서비스지원계약에 따라 국내소비자 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서비스 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화은행을 통하여 원화 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 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12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사 및 제조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재화·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사용 할인

- 카드사 제휴할인, 항공사 마일리지, 쌍방형 정산유형 할인, 일방형 정산유형 할인 마일리지 사용 외 할인
- 카드사 청구할인, 제조사 특정상품 할인

질의내용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제휴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 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 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 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기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답변요지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홈쇼핑사(수탁자)와 상품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홈쇼핑사는 홈쇼핑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 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 고객은 홈쇼핑을 통해 질의법인의 상품 구매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에서 적립금만큼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이러한 판촉활동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홈쇼핑사가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 합의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고객이 적립금 사용으로 할인받는 금액(본건 할인액)은 홈쇼핑사가 부담하여 질의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함
-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본건 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할인액을 상품매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17.3.31. 이전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우리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질의내용

'17.4.1. 이후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 구매시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해당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문

귀 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2022.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1.27.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4

토제·건물 일괄공급 / 기 건물을 철거하고 토제만 /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답변요지 사전-2022-법규부가-0299, 2022.03.15.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또는 "매도인")은 ◎◎시 △△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1.11월 고시원의 토지, 건물('04년 준공)을 00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에 0억원, 잔금일인 '22.2월에 00억원 을 받고 매도함
 - * 매매특약사항에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계획으로 건물가액 1억1천만원(VAT포함) 을 포함하여 37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함
- 건물 철거 사유는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다세대빌라를 신축하기 위함으로 '21.12월 건축허가서가 나왔으며(이때 다세대 신축공사 허가도면 제출), '22.2월 질의인 명의로 건축물 해체심의 신청함
 - * 매수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22.1월 사업자등록
- 계약서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가 있음

질의내용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매매특약 사항으로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 신 문

고시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고시원(토지·건물)을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하며 계약상 구분된 토 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5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사 수수 여 부 등

답변요지 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02.01.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 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관계

- 이동통신사는 고객유지·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회원")에게 영화관, 편의점 등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할인형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멤버십")을 운영 중임
 - 이동통신사는 질의법인(또는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멤버십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대가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함
 - 제휴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제휴사의 물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함
- 질의법인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 중 일정액(이하 "쟁점지급금")을 제휴사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대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회원에 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대행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 신 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6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

부

답변요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01.0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 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은 '06.8.31. 상가(건물·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8.31. 양 도하고
 -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등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포 괄양도로 신고
- 질의인은 '20.9.2.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건 사업 양도를 위해 지출한 중개수 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7~8월분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 급 신고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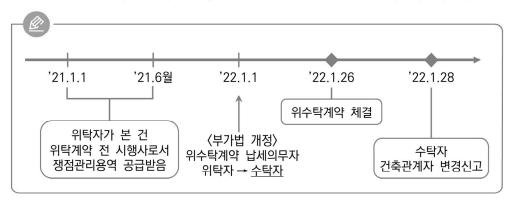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요지 사전-2022-법규부가-0262, 2022.03.20.

'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수탁자)은「신탁법」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로서
 - '22.1.26. ㈜□□홀딩스(이하 "위탁자")와 **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2.1.28. 본건 부동산 신축 관련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하여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
- 위탁자가 '21.1월부터 6월 중에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등 4개 용역 업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PM용역, 설계용역, 경관 심의자문용역, 인허가 등, 이하 "쟁점관리용역")를 위탁하여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 계약금 등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질의내용

수탁자가 위탁자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는지 여부

회 신 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자기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관리, 처분 및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2022.1.1. 전에 용역업체와 체결한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8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온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요지 사전-2022-법규부가-1051, 2022.11.08.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거래처A와 거래처B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 거래처A는 거래처B로부터 제작비를 받지 못하여 질의법인에게 자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래처B에게 자재비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3자간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거래처A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질의법인에 게 양도함으로써 질의법인과 거래처A간의 채무관계는 종결함
- 거래처B는 파산 직전으로 공장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거래처B로부터 양수채권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예정임

질의내용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회수할 외상매출금)을 양수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 신 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A로부터 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매출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거래처B가 파산 등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9

플랫폼/가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지

답변요지 서면-2022-법규부가-1413, 2022.10.13.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 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 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 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됨

질의내용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회 신 문

사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20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답변요지 서면-2021-법규부가-4332, 2022,08.11.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7월부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2개의 지점을 운영 하면서
 - A지점이 폐기물 관련 허가사업장인 B지점으로부터 폐기물허가증을 위탁받아 원재료를 수입하고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A지점 명의로 제품수출을 하면서 수입부가세를 납부 유예 받았는데
 - '21년 폐기물허가증 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B지점 명의로 폐기물 관련 원재료 수입 및 통 관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소액임
- A지점에서는 폐기물을 제외한 원재료 등 수입 및 제품수출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①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②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임
 - * 질의법인의 전체 수출액 비중은 72.8%이고, 그 중 A지점이 99.8% 차지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문

귀 서면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 8.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 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역' 검토보고서

- 국세청, 2023. 10

IASB의 IAS 21 개정 배경

- □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지배기업의 표시통화와 교환 가능하지 않을 때 해외사업장 환산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환율에 관한 질의(베네수엘라 사례)에서 IFRS 해석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 IASB는 두 통화 간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초인플레이션 국가들에서 종종 일어나며, 해당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 개정
- □ IAS 21에서는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환율은 규정하고 있지만(문단 26),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의 적용 확율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였음

§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환율이 다양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IAS 21의 개정을 통해 통화의 교환가능성 평가에 대한 규정과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 추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K-IFRS 제1021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두 통화 간 교환가능성 평가 [1단계]

- □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화간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 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부록 A, 문단 A2~A10)
 - ①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 (Time frame)
 - ②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 ③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 ④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 5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 □ (기간) 교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K-IFRS 제1021호의 '현물환율'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함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 8 ...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 통화간 교환거래에 적용되는 법적이나 규제 요건,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 및 정 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 등의 사항은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다른 통화를 획득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을 기술할 것이 요구되며 관할 기관에서 목적 검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상적인 지연으로 볼 수 있음
- [2] (능력) 다른 통화를 획득하려는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만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 기업이 통화를 교환할 의도가 없거나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교환 가능함
- ③ (시장) 그 교환 거래가 집행가능(enforceable)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 커니즘만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 * 개정기준서에서는 집행가능성은 법률문제(matter of law)라고 규정하며, 해당 시장과 교환메 커니즘이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지는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보았음
 - 국가 공인거래소 및 시장(예를 들어, 정부관할거래소)의 교환거래는 이러한 집행가능한 권 리와 의무를 창출하나 비공식적 교환 거래는 그렇지 않음
- 4 (목적)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 특정 목적의 외화 거래 시 그 목적에 따라 교화 비율이 다르거나.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교환 목적을 고려하여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함

- * 예: 국외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타국 자본 송금에 벌칙 환율 적용하는 경우, 또는 자본 송금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경우에만 통화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 또한 각 상황별로 통화 획득 목적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교환가능성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음(문단 A7, IE 7~8 참조)
- *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 보고→개별 외화거래, 자산 또는 부채의 실현 또는 결제를 가정기 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를 사용→기업의 순자산 또는 순부채의 실현 또는 결제를 가정해외사 업장 환산→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 또는 결제를 가정
- [5] (금액)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no more than an insignificant amount)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환가능하지 않음을 명시함
-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은 그 목적상 필요한 다른 통화 의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함
 - * 예: 기능통화가 LC인 기업이 통화 FC로 표시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FC로 표시된 외화부채 잔액의 총액과 비교하여 해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FC의 총 금액이 경미한지 평가함

2 기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2단계)

- □ (주요내용) 공개초안의 문단 A2~A10에 따라 두 통화 간 교환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여 교환 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할 현물환율을 추정(estimation)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① 현물환율 추정 시 목적
 - [2] 현물환율의 추정: 관측 가능한 환율 또는 다른 추정 기법
- ① (목적) 측정일에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그 날짜에 추정하여야 하며,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기업의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는 것임 (문단 19A)
- ② (추정) ①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없이 사용 하거나 ②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
 - ① [관측 가능한 환율] 예를들어 다음 중 하나의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목적의 현물환율: 기업이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현물환율 (문 단 A13~A14). 특정 목적으로 교환 가능하지 않더라도 통화가 다른 목적으로는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음
 - 첫 번째 후속환율: 통화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첫

번째 환율 (문단 A15~A16). 측정일에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더라도 후속적으로 교환 가능해 질 수 있음

② [다른 추정 기법의 사용] 집행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 니즘에 의한 교환 거래 환율 등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문단 19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환율을 조정 (문단 A17)

3 📗 공시

- □ (주요내용) 교환가능성의 결여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및 예상정보)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문단 57A)
 - 교환가능성 결여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 사용된 현물환율
 - 추정 프로세스
 - 교화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 □ (세부사항) 상기 문단 57A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록 A 문단 A18~A20은 다음을 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의 명칭 및 그러한 통화의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 사용된 현물환율 및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가)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문단 A12~A16 참조)
 (나)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물환율(문단 A17 참조)
 - 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를 해외사업장의 기 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
 - (1) 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주요 사업 장소
 - (2) 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 (3) 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재정 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내용과 조건

2. 시행일과 경과규정

-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
- 새로운 개정사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용이 효익을 초과한다고 보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 (경과규정) 이번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최초 회계연도에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거 비교정보를 재작성 하지 않고. 최초 적용일*에 추정 현물화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
 - * 이번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
 -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시:
 - 화폐성 외화항목 및 공정가치로 측정한 비화폐성 외화항목을 환산
 - 최초 적용의 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 ②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화산 시
 -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환산
 -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자본항목을 환산
 - 최초 적용의 효과를 누적환산차이(자본의 별도항목)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

K-IFRS 제102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이번 개정은 국가 경제의 급격한 붕괴에 따라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기능 통화에 의한 외화거래 보고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규 정을 명확하게 한 개정으로.
-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해외 통화의 교환을 국가가 규제하는 국가(또는 그럴 가능 성이 있는 국가)와 거래 또는 해당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지배기업의 경우, 통 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내기업의 이러한 국가와의 거래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영업활동이 제한적일 것 으로 판단되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과거 필의회신 검토

□ 해당사항 없음

V

용어의 선택

1

'Exchange mechanism'의 번역

- □ 기업회계기준서에서 'mecahnism'은 다수의 기준서에서 그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에 따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 선택 필요
-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23에서 '제도'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5F에서 '방침'으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문단 B2에서 '메커니즘'으로 번역 없이 사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B27에서 '구조'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48 및 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의 문단4에서 '절차'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AG38F 및 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 사업'의 문단2에서 '방식'으로 번역

	IFRS	K-IFRS
IFRS 10	B23 (iv) the absence of an explicit, reasonable mechanism in the founding documents of an investee or in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that would allow the holder to exercise its rights.	(라) 피투자자의 설립 문서나 적용할 수 있는 법규에서, 보유자에게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IFRS 10	B85F Exit mechanism that are only put in place for default events, such as a breach of contract or non-performance, are not considered exit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is assessment.	B85F 계약 위반이나 미이행과 같은 채무불이행 사건만을 위한 출구 <u>방침(exit mechanisms)</u> 은 이 평가 목적상 출구전략으로 보지 않는다.
IFRS 11	B2 Contractual arrangements can be evidenced in several ways. An enforceable contractual arrangement is often, but not always, in writing, usually in the form of a contract or documented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Statutory mechanisms can also create enforceable arrangements, either on their own or in conjunction with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B2 계약상 약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은, 항상은 아니지만 흔히,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나 회의록 방식으로 문서화된다. 법률상 <u>메커니즘</u> 은 그자체로써 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과 함께 강제할 수 있는 약정도 창출할 수 있다.

IFRS 17	B27(b) contracts that have the legal form of insurance, but return all significant insurance risk to the policyholder through non-cancellable and enforceable mechanisms that adjust future payments by the policyholder to the issuer as a direct result of insured losses.	B27 (2) 보험의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계약자가 계약발행자에게 미래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취소불가능하고 강제가능한 구조를 통해 모든 유의적 보험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IAS19	48 Where an entity funds a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 by contributing to an insurance policy under which the entity (either directly, indirectly through the plan, through the mechanism for setting future premiums or through a related party relationship with the insurer) retains a legal or constructive obligation,	48 기업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거나 미래보 험료 산정절차를 통하거나 보험자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 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IAS32	AG38F This will occur if, and only if, the gross settlement mechanism has features that eliminate or result in insignificant credit and liquidity risk, and that will process receivables and payables in a single settlement process or cycle.	AG38F 이는 총액결제 <u>방식</u> 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수준으로 줄이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결제주기 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존재할 것이다.
IFRIC 해석서 6	4 The Directive states that each Member State shall establish a mechanism to have producers contribute to costs proportionately 'e.g.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share of the market by type of equipment.'	4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생산자에게 원가를 비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형화된 <u>절차(예를 들어, 제품종류</u> 별로 생산자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에 비 례하여 부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야 한다.
IFRIC 해석서 2	2 The arrangement is governed by a contract that sets out performance standards, mechanisms for adjusting prices, and arrangements for arbitrating disputes. Such an arrangement is often described as a 'build-operate-transfer', a 'rehabilitate-operate-transfer' or a 'public-to-private'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	2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에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민간투자사업은 성과기준, 사용료의 조정방식 및 분쟁의 중재방식을 규정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관리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수행방식에는 '건설-운영-이전' 방식, '복구-운영-이전' 방식 등이 있다.

- 다음의 용어는 하기의 이유로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음
 - '방침'은 일을 치러 나갈 방향과 계획의 의미로 의도하는 바가 다르므로 제외
 - '제도'는 작용의 원리나 구조의 의미를 충분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정립된 체계 그 자체나 형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제외
 - '절차'의 경우 'procedure'의 의미로 이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 개정안에서는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교환 거래가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 하는 시장이나 exchange mechanism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A5)
- 이의 성격과 유형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 그 예로 정부가 관리하는 exchange mechanism을 들고 있음(BC46)
- 제시된 사례1에서는 관련 당국이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ss)'를 완료한 후에만 교 환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교환거래가 정상 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교환가능성 평가 시 고려한 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음
- '메커니즘'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뜻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라고 설명되어 있음
 - 이러한 사전적 설명은 타 기준서에서 번역 시 사용된 '방식', '구조' 또는 '절차'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 (결론) 상기의 분석 내용을 고려할 때, '메커니즘'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교환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절차와 교환의 방식 또는 구조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환메커니즘'으로 번역함

2 | Exchangability'의 번역

- □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환율을 규정했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26과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타 기준서*에서 이를 '교환 가능한'으로 번역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문단 31C, D27와 BC63F

	IFR5	K-IFRS
IAS 21	26 If <u>exchangeability</u> between two	26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
	currencies is temporarily lacking, the	<u>능한</u>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
	rate used is the first subsequent rate at	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which exchanges could be made.	

IFRS 1

31C/D27 (b) <u>exchangeability</u> between the currency and a relatively stable foreign currency does not exist.

BC63F ... An entity would be unable to comply with IAS 29 if a reliable general price index is not available to all entities with that same functional currency, and <u>exchangeability</u> between the currency and a relatively stable foreign currency does not exist.

31C/D27 ... (2) 해당 통화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 간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

BC63F ... 동일한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일반물가지수를 이 용할 수 없고 해당 통화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 간의 <u>교환이 가능</u>하지 않다 면 IAS 29를 준수할 수 없게 된다.

- □ Exchange는 교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기준서에서 '환전'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를 확인함
-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준서에서 'exchangeability'를 '환전'으로 번역하고 있는 사례는 식별되지 않았으나, IFRS의 'convertible'을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환전으로 번역한 경우를 확인하였음

	IFRS	K-IFRS
IAS	BCZ47 If a currency is freely	BCZ47 통화가 자유롭게 <u>환전</u> 되고 활성시
36	convertible and traded in an active	장에서 거래된다면, 현물환율에는 그 통
	market, the spot rate reflects the	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시
	market's best estimate of future events	장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되어 있다.
	that will affect that currency.	
		BCZ50 통화가 자유롭게 <u>환전</u> 될 수 없거
	BCZ50 Even if a currency is not freely	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그 결
	convertible or is not traded in an active	과로 더는 현물환율이 통화에 영향을 미
	market—with the consequence that it	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시장의 최선의 추
	can no longer be assumed that the spot	정치를 반영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하
	exchange rate reflects the market's best	더라도,
	estimate of future events that will	
	affect that currency	

- '서로 종류가 다른 화폐와 화폐의 교환'이라는 '환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환율변동효 과를 다루는 이 기준서의 맥락에 맞추어 '환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 (결론) '환전'의 사전적 의미 및 문맥상 자연스러움을 고려 시 '환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일한 단어의 기존 번역 및 공개초안 시 선택한 번역 대안을 고려하여 '교환'으로 번역하였음

3 II 'Amount'의 번역

- □ 획득가능한 통화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amount'를 '금액'과 '수량' 중 어떤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검토함
- 개정기준서는 교환가능성을 평가 시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문단 A10).
-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 (no more than an insignificant amount)만 획득 할 수 있는 경우 통화간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음
- □ 통화간 교환의 제한은 다수의 경우 수량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량'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통화의 유의성 평가의 예시로, 외화 부채의 결제를 목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통화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외화의 금액을 외화 부채 잔액의 총액(합계)와 비교하라고 설명하고 있음(문단 A10 참조).
- □ (결론) 통화간 교환을 제한하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획득할 수 있는 외화의 수량이 조정되는 방식이라면 문맥상 '수량'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율변동 효과가 재무제표에는 금액으로 반영되는 점과 부채의 금액(잔액)과 비교하도록 한 개정기준서의 예시 등을 고려하여 '금액'으로 직역하는 방안을 선택함

4 ││그 외 기타 용어의 선택

- □ 개정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하기 주요 단어에 대해 다른 기준서의 기존 번역시 사용된 용어 및 개정안의 목적을 고려하여 하기의 용어를 사용하였음
 - 'Enforceability'는 '집행 가능성'*으로 번역
 - * 집행 가능성(IFRS16, BC127/BC129, IFRS15, 10/37/BC31~BC35/BC50/BC81.., IAS32, BC85/ BC87/ BC89...), IAS38, 13, 강제가능성(IFRS17, 2/B27/B105)
 - 'Insignificant'는 '경미한'*으로 번역
 - 'No more than an insignificant amount'는 '단지 경미한* 금액'으로 번역
 - * 경미한(IAS40, 10), 경미하여(IAS38, 79), 경미하다면(IAS34, 15A)
 - 'Significance'는 '유의성'*으로 번역
 - * 유의적인 (IAS24, 27), 중요성 (IAS20, 36), 유의성(IFRS13, 73,93/B37), 유의적으로 (IFRS9, B5.5.9), 중요하다고(IFRS8, 17), 유의성(IFRS7, 1)
 - 'Observable'은 '관측 가능한'*으로 번역
 - * 관찰할 수 있다(IAS41), 관측가능한 or 관측 가능한(IAS38, IAS36, IAS28, IAS16)

- 'Normal administrative delay'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으로 번역
- 'Fact pattern'은 '사실 관계^{*}로 번역
 - * 사실 유형(fact patterns)(IFRS11, BC45I), 사실관계(IFRS9, BC6.350), 사실 패턴 (pattern)(IFRS10, BC243)

VI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VII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21 개정 발표	'23년 8월 15일
K-IFRS 제1021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3년 10월 13일
K-IFRS 제1021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23년 10월 16일 ~ 11월 15일
K-IFRS 제1021호 개정안 심의·의결	'23년 12월 08일
금융위원회 보고	'24년 상반기 中
공표	'24년 상반기 中